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준용함

○ 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에도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적용함

3.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등 규정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채용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각 신설)

나.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준용하고자 함(안 제7조)

다. 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 면직심사위원회 의견 청취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면직 사유에 관계없이 미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조)

4.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 호 2020. . . 공포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서관, 비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과처분”을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으로, “제78조

의2, 제78조의3”을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으로 한다.

제8조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에 따라”를 “별정직공무원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서관, 비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

	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

	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등) ---------- ---------- ---------- ---------- ---------- ----------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	② 별정직공무원---------- ---------- ----------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 ----------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 -------.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 ---------- ----------.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 ---------- ---------- -- 교부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2. 별정직공무원을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